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2026. 5.

재정경제기획위원장

1.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및 발의자: 2025년 12월 9일, 김영진의원 등 13인

나. 회부일자: 2025년 12월 10일

다. 상정 및 의결일자:

제432회 국회(임시회) 제1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2.23.)

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대체토론, 소위원회부

제434회 국회(임시회)폐회중

제1차 경제재정소위원회(2026.4.29.) 상정, 심사, 의결(수정)

제7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4.30.) 상정, 소위심사보고, 찬반토론,
의결(수정)

2. 제안설명의 요지

(김영진의원)

현행법은 기획예산처장관이 보조금통합관리망의 구축·운영 및 유지·보수 등 관리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되, 통합관리망의 운영·개선, 보조금관리정보 및 금융·신용정보 처리 등에 관한 업무를 한국재정정보원에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한편,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에 따르면 기획예산처장관은 보조금통합관리망을 통하여 보조금 부정수급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이를 위한 현장점검을 실시할 수 있으며 이러한 현장점검 업무를 한국재정정보원에 위탁하고 있음.

그러나 이는 현장점검 업무를 한국재정정보원에 위탁할 수 있다는 법적 근거 없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이에 대한 법률적 정비가 필요한 상황임.

이에 한국재정정보원 업무 위탁 범위에 보조금 부정수급 모니터링을 위한 현장점검 업무를 추가하여 법적 근거에 기반에 합리적 업무 위탁이 가능토록 하고자 함(안 제26조의7제4항제5호 신설).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검토보고서 참조

4. 대체토론의 요지

없음

5. 소위원회 심사내용

(소위원장 정태호)

부정 수급 의심사업의 실제 해당 여부를 검사하는 점검 업무도 위탁 업무에 포함하는 것으로 수정하여 의결하였음.

6. 찬반토론의 요지

없음

7. 심사결과

수정가결

8. 소수의견의 요지

없음

9.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심사내용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 심사를 거쳤음

※ 심사보고서 불임서류 :

1.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수정안
2.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수정안

제안연월일 : 2026. 4.

제 안 자 : 재정경제기획위원장

수정 이유 및 수정주요내용

국고보조금 부정 수급 모니터링에 따라 추출된 부정 수급 의심사업의 실제 해당 여부를 검사하는 점검 업무를 한국재정정보원이 수행하고 있음을 고려하여, 기획예산처장관이 한국재정정보원에 위탁하는 업무에 보조금통합관리망을 통한 보조금 부정 수급 모니터링 결과에 대한 점검 업무를 추가하도록 수정함.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수정안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모두 개정문을 다음과 같이 한다.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안 제26조의7제4항제5호 중 “부정수급 모니터링을 위한 현장점검 업무”를 “부정 수급 모니터링 결과에 대한 점검 및 현장조사 업무”로 한다.

수정안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수정안
제26조의7(보조금통합관리망의 운영 등의 총괄 및 업무의 위탁) ① ~ ③ (생략)	제26조의7(보조금통합관리망의 운영 등의 총괄 및 업무의 위탁) ① ~ ③ (현행과 같음)	제26조의7(보조금통합관리망의 운영 등의 총괄 및 업무의 위탁) ① ~ ③ (개정안과 같음)
④ 기획예산처장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한국재정정보원법」에 따른 한국재정정보원(이하 이 조에서 “한국재정정보원”이라 한다)에 위탁한다.	④ ----- ----- ----- ----- ----- ----- ----- ----- -----.	④ ----- ----- ----- ----- ----- ----- ----- ----- -----.
1. ~ 4. (생략)	1. ~ 4. (현행과 같음)	1. ~ 4. (개정안과 같음)
<u><신설></u>	5. <u>보조금통합관리망을 통한 보조금 부정수급 모니터링을 위한 현장 점검 업무</u>	5. ----- ----- <u>-부정 수급 모니터링 결과에 대한 점검 및 현장 조사 업무</u>
⑤ (생략)	⑤ (현행과 같음)	⑤ (개정안과 같음)

법률 제 호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의7제4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보조금통합관리망을 통한 보조금 부정 수급 모니터링 결과에 대한 점검 및 현장조사 업무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6조의7(보조금통합관리망의 운영 등의 총괄 및 업무의 위 탁) ① ~ ③ (생 략)	제26조의7(보조금통합관리망의 운영 등의 총괄 및 업무의 위 탁)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기획예산처장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한국재정정보원 법」에 따른 한국재정정보원 (이하 이 조에서 “한국재정정 보원”이라 한다)에 위탁한다.	④ ----- ----- ----- -----.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u><신 설></u>	<u>5. 보조금통합관리망을 통한 보</u> <u>조금 부정 수급 모니터링 결</u> <u>과에 대한 점검 및 현장조사</u> <u>업무</u>
⑤ (생 략)	⑤ (현행과 같음)